

문서번호	보건의료정책과-9023	주무관	공공보건팀장	보건의료정책과장	보건정책관	복지건강실장
결재일자	2013.3.20.			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	
방침번호		첨 조				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---

# 2013년 참여형 보건지소 확충계획

---

2013. 3.

**복 지 건 강 실**  
**(보건의료정책과)**

## 사전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■ ( ) 무 □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■ ( ) 무 □
	● 전 문 가 : 유 ■ ( ) 무 □
	● 음 브 즈 만 : 유 □ ( ) 무 □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□ 환경 □ 재해 □ 기타 ■ ( ) 무 □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■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 홍보 □ 취약계층 ■ 성인지 □ 장애인 □ 디자인 □ 갈등발생 가능성 ■ 유지관리 비용 ■ 무 □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□ ( ) 무 □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□ ( ) 무 □
	● 기 업 : 유 □ ( ) 무 □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관 계 기 관 : 유 ■ ( ) 무 □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□ ( ) 무 □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□ ( ) 무 □

# 2013년 참여형 보건지소 확충계획

지역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지역공동체 중심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'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' 실현

## I 추진근거

- 지역보건법 제10조(보건지소 설치) 및 제19조(비용의 보조)
- 제35대 시장공약사항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"도시보건시설" 확충

## II 추진경과

- '12년 말 현재 서울시 보건지소 10개소 확충
  - 국비지원 5개소 : 노원('08), 송파('09), 광진('09), 성북('11) 은평-구산('12)
  - 시비지원 5개소('12년 신규추진) : 도봉, 서대문, 서초, 양천, 은평-응암
  - ⇒ 질병예방 관리, 재활 등 포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 형태로 '표준형'으로 명명
- '13년 참여형 보건지소 4개소 확충계획 신규 추진
  - 관 주도의 건강서비스 제공중심 공공보건 인프라 확대에서 나아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내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
  - 지역특성과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하여 시민의 수요에 근거한 사업수행
  -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
- 참여형 보건지소 지침 마련을 위한 사업자문
  - '13. 1~2월 시민사회단체, 보건소장 등 자문 및 내부검토회의 5회 이상 실시
    -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방향, 사업내용, 운영방법, 자치구 기술지원 방안 등

### Ⅲ 추진방향

- 취약지역 시민의 다양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활동 거점 마련
- 사업기획단계에서 평가까지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보건지소 운영
- 관할지역 특성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밀착형 건강사업 추진

### Ⅳ 추진계획

#### 1 추진목표

- 2013년 참여형 보건지소 4개소 신규 확충
- 2016년까지 참여형 보건지소 50개소 확충

연도별 확충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신규확충	4	16	15	15
누 계	4	20	35	50

#### 2 추진방법

- 자치구 보건소 대상 사업공모 통해 선정된 자치구 보건지소 설치비 지원
- 시민참여 사업 조기정착, 시민체감도 향상과 사업효과 산출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, 우수사례 발굴, 교육 프로그램 운영, 사업자문 등 기술지원 실시

#### 3 사업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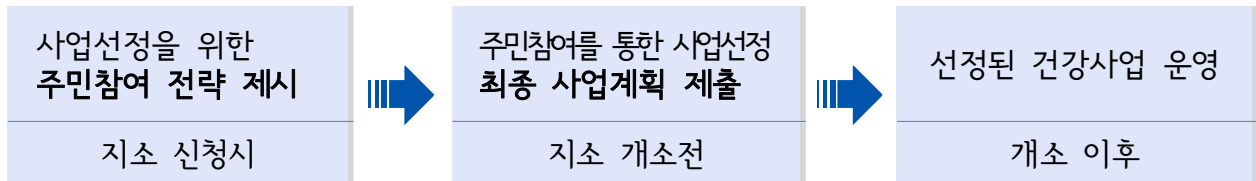
- 사업대상 : 25개 자치구
  - 보건지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여건을 갖춘 자치구
  - 기존 보건지소 운영 자치구도 사업신청 가능

## 4 사업내용

### ■ 사업선정

#### ○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1~2가지 선택

- 관할지역의 건강문제, 주민요구, 보건의료 자원 등 지역현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,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업 선정



#### ○ “단순 일반진료” 지양

#### ※ 자치구 준비사항

- 지소 신청시 : 사업선정을 위한 Process 계획 수립
- 지소 개소시 : 사업선정에 따른 최종 사업계획 수립

### ■ 운영전략

#### ○ 주민조직화, 지역사회 네트워크, 주민참여 건강조사 등 주민참여 전략을 통한 사업수행

- **주민조직화** : 지역건강소모임 구성, 건강리더 발굴 등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변화 유도
- **지역사회 네트워크** :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과 컨소시엄 형태의 네트워크 형성, 통합사례관리 수행
- **주민참여 건강조사** :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건강수요와 사업내용, 운영전략을 도출

→ 지역의 건강문제와 자원을 파악,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결 가능한 건강사업을 도출하는 과정과 선정사업 운영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포함하여 진행

#### ○ 주민참여 사업수행을 위해 개소 이전시점부터 사용가능한 운영비 지원

- 연간 운영비 지원액 70,000천원 중 25,000천원 선지원

(운영비 예산집행 예시 : 주민활동가 인건비, 주민참여 건강조사비, 주민조직 운영 등)

## ■ 사업운영

- “보건지소”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자치구 직접 운영 또는 일부사업 위탁 수행
  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2항”에 의거 전체 보건지소 운영위탁 불가
  - 위탁대상 : 협동조합, 의료기관, 대학, 시민단체 등 자치구 실정에 따라 선정
- 보건지소 협의체 구성 : 주민(건강)회의, 운영위원회 등 주민참여 창구 마련
- 보건지소 공간 개방 : 건강모임 등 주민활동을 위한 보건지소 공간 개방 운영

## 5 지원기준

### ■ 지역선정

- 구별 보건의료 취약 洞을 중심으로 인구 1~2만 범위의 지역
- ‘12년 서울시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보건정책방안 수립 연구에서 제시한 자치구 동별 건강취약 지역(동별 표준화사망비와 박탈지수 반영한 하위 5분위 71개동 및 자살 고위험 상위 5분위 59개동)을 우선 고려하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선정

### ■ 지원금액 : 1개소당 최대 7억원 내 설치비 지원

- 최대 지원액 한도 내에서 시설, 보건의료장비, 차량 유동적 사용 가능
- 단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 7천만원 한도 내 사용
- 보조비율 시비 100%, 지원금액 이상 소요비용은 구비 부담

### ■ 예산배분 : 자치구 균등배분

### ■ 시설기준

- 설치장소 : 주민의 생활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
- 시설요건 :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시설로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것
- 면적기준 : 230m<sup>2</sup>(70평) 이상 확보 권고
- 지원내용 : 신증축, 개보수, 매입, 분양, 임대(년 단위 전세임대만 가능, 월임차료 사용불가)
  - ※ 토지매입비 제외
  - ※ 보건지소의 조속한 개소를 위하여 매입, 분양, 임대 권고

- 지원액 : 최대 7억원 내에서 아래 기준 적용
  - 건물 매입, 분양, 임대 : 최대 지원액 한도 내, 면적당 기준단가 없음
  - 신증축 단가 : **2,749천 원/m<sup>2</sup>**
  - 개보수 단가 : **1,731천 원/m<sup>2</sup>**

< 단 가 기 준 >		
○ 신증축 : '11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 m <sup>2</sup> 당 (공공업무사무소 2,299천원+병원 2,792천원)/2×1.08(물가상승률4%×2년)=2,749천원		
○ 개보수 : '10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기준('11년 기준 없음) m <sup>2</sup> 당 (공공업무사무소 1,345천원+병원 1,746천원)/2×1.12(물가상승률4%×3년)=1,731천원		
지원구분	지원액별 면적산출	
	6억3천만원(장비,차량 신청시)	7억원(장비, 차량 미신청시)
신증축	230m <sup>2</sup>	255m <sup>2</sup>
개보수	364m <sup>2</sup>	405m <sup>2</sup>

※ 소요비용이 최대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 소요비용으로 지원

## ■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

- 차량을 포함한 보건의료장비 7천만원 한도 내 지원
  - 보건의료장비 : 100만원 이상 장비
  - 차량 : 보건사업용 차량 1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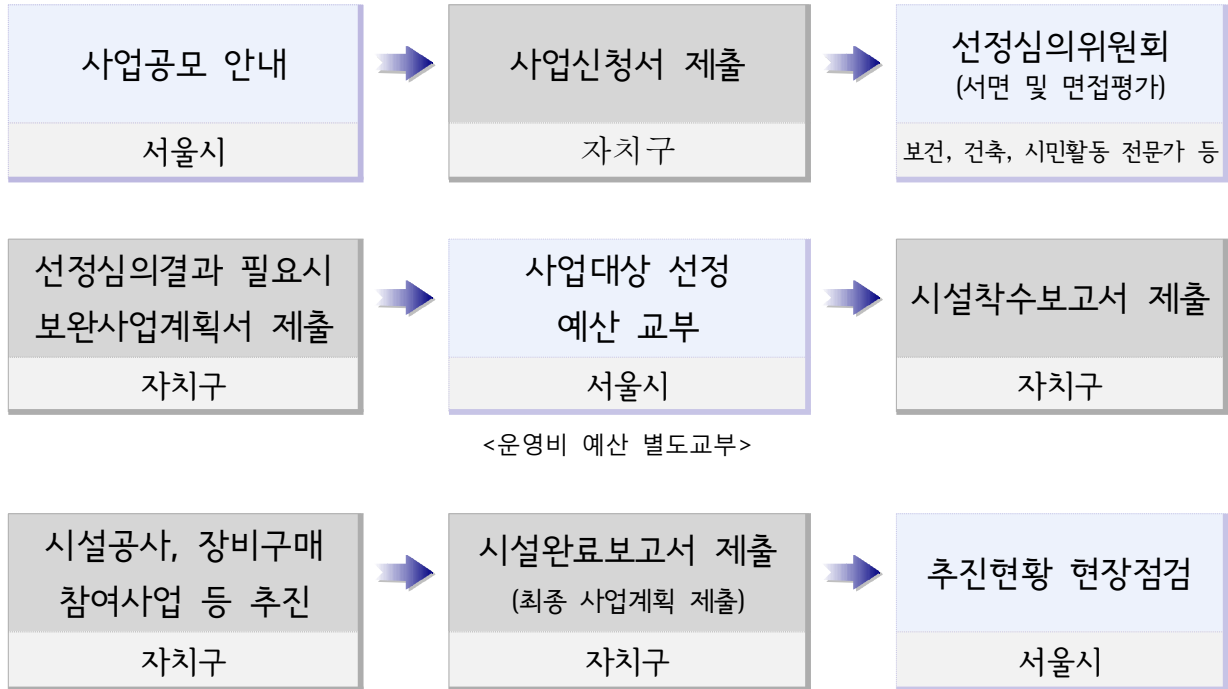
## ■ 인력기준

-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'별표2'의 배치기준 권고
  - 보건지소장 1인(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 임용), 간호사 3인
- 5명 내외 범위로 탄력적 인력배치, 자치구별 인력확보 방안 마련

## ■ 보건지소 법적기반 마련

- 보건지소 설치조례 제정 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등
  - 지역보건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시·군·구 조례로 보건지소 설치

## 6 추진절차



## VI 소요예산

### ■ 예산액

- 보건지소 확충지원(자체) 참여형 700,000천원×4개소=2,800,000천원

### ■ 예산과목

- 보건의료정책과,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,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, 보건지소 확충 지원, 자치단체등자본이전, 자치단체자본보조

## VII 추진일정

### ■ '13.3.15 : 보건지소 사업 공모



- '13.3.22 : 자치구대상 보건지소 사업설명회
- '13.4.19 : 표준형 보건지소 자치구 사업신청서 제출 및 선정심의
- '13.4.26 : 참여형 보건지소 자치구 사업신청서 제출 및 선정심의
- '13. 5월 : 사업대상 선정 및 예산교부
- '13. 6월 : 보건지소 운영 기술지원
- '13. 12월 : 보건지소 설치운영 모니터링

## Ⅷ 기대효과

-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강화, 시민참여 확대로 “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” 실현
- 예방중심의 질병관리,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

첨부 : 2013년 서울특별시 보건지소 사업지침. 끝.